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송재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의자 : 송재혁 의원(1명)

찬성자 : 권순선, 김광수, 김기덕,
김제리, 김종무, 김태호,
김평남, 송도호, 송명화,
오한아, 오현정, 우형찬,
이병도, 이승미, 이영실,
이은주, 장상기, 전병주,
채유미, 홍성룡, 황규복,
이상훈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, 해결하며, 각종 문화,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(안 제1조)
- 나. 주민자치, 주민자치회, 자치회관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,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바. 보조금 지원 및 지도, 감독 근거를 규정함(안 제6·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.
- 나.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주민자치”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, 공론,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.

② “주민자치회”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.

③ “자치회관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, 복지,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

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 범위)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
2.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
3.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4.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
2.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
3.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
4.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

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)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